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의자 : 이성권 · 조승환 · 김은혜
권영진 · 김용태 · 곽규택
이만희 · 이현승 · 김종민
이인선 · 김희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규모, 이용자 수 등 주요 지표에서 가파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담기 위해
서 제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디지털자산산업발전정책의 수립 등(안 제9조)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의 신설(안 제16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라. 디지털자산사업 인가 제도 신설(안 제18조)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도록 함.

마. 디지털자산의 발행 등록 의무화(안 제21조)

국내 및 국외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디지털자산을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24조)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디지털자산거래의 방
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 디지털자산, 거래방법, 수수
료, 손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사. 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안 제33조)

공정한 디지털자산거래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투명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디지털자산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함께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디지털자산산업”이란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디지털자산을 발행·유통하는 행위
 - 나. 디지털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 다. 디지털자산을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라. 디지털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마.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바. 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디지털자산시장”이란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디지털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4. “디지털자산사업”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디지털자산사업자”란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디지털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디지털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과 견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과 견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의무)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거래 질서의 견전화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9조(디지털자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투명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공조·규제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자산산업 발전과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디지털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4.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개선 실적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 실적
6. 디지털자산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7.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
8. 그 밖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자산산업에 대한 지원, 디지털자산거래 시장의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위원회와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그 효과 및 타당성,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의 내용들을 금융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 ①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디지털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
2.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3.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디지털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6.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7.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 및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 · 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 공급계획
3.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전문교육기관 확충

제3장 디지털자산사업 인가 및 디지털자산 발행 등록

제18조(디지털자산사업의 인가) ①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나. 외국 디지털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디지털자

산사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디지털자산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둘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6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⑨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제8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제5항 및 제7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흑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제5항 또는 제7항의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 사항·첨부서류 등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가요건의 유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미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디지털자산 발행 등록)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디지털자산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정보
2.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보

3. 디지털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그 밖에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등록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과 등록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22조(예치금의 보호)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23조(디지털자산의 보관) ①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주소(디지털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

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자기의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정보공시 의무)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디지털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정보
2.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보
3.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
4.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관한 정보
5.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디지털자산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설명의무)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디지털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7조(보험의 가입 등)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디지털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명의대여 금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디지털자산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3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

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디지털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디지털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⑤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서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디지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디지털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디지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1조(디지털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디지털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디지털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

제33조(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 설립 등) ① 공정한 디지털자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이하 “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및 정관
2. 해당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및 그 전문성
4. 재정적 의존 편중 여부
5.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 보안,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

6. 디지털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대표성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 자율규제 기능의 전문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처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적 구성이 디지털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이 법과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가상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사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장 감독 및 처분 등

제36조(디지털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31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경고
4. 주의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디지털자산 발행 등록을 한 경우
3.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19조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우
9. 제1항제2호에 따른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자산 발행 등록의 취소
2. 제2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항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39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디지털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4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 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2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

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별칙

제42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인
가를 받은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
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디지털자산
사업을 영위하게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디지털자산 발행
등록을 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 발행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디지
털자산을 발행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영업을 영위한
자

⑥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
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⑦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몰수·추징) ① 제4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8. 제3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9.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디지털자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상자

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